



대한당뇨병학회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우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101-2104,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ku, Seoul, 04146, Korea
TEL (02)714-9064 / FAX (02)714-9084 / E.mail: diabetes@kams.or.kr / Homepage: www.diabetes.or.kr

문서번호 대당학 제2026-010호

시행일자 2026. 1. 26.

수신 회원 제위

제목 춘계 당뇨병 연구비 신청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춘계 당뇨병 연구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하오니 연구과제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연구비 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7조의 구비서류를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양식별첨)는 **워드파일**로 작성해 주시고, 접수는 학회 e-mail (diabetes@kams.or.kr)로 부탁드립니다.

4. 연구비 주요 규정

- 신청자격: 학회 정회원 (입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2025년 2월 28일 까지의 가입자 해당)이며 조교수급 이상 (전임강사 및 임상조교수 포함) 및 부교수급 이하, 임상강사(Fellow) 지원불가
- 수혜자의무: 연구비 수혜 후 2년 이내에 학술대회 구연 발표, 4년 이내에 논문제재완료, DMJ 3회 인용
- 국가기관 및 타학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과제의 중복지원을 금지
- 임상연구비와 교육연구비의 경우에는 진료지침에 대한 기여 가능성 평가
- 교육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개인이 아닌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5. 연구비 종류 및 신청마감일

- **당뇨병학회 연구비** (선정 편수와 상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과제: 3천만원 0편, 2천만원 0편
임상과제: 3천만원 0편, 2천만원 0편
- **서류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3일(화) 오후 6시 (접수 확인 메일발송)**
- **시상식: 제39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26.5.1(금)오전 10시 40분 오프닝시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구비 시상식 진행예정으로 수혜자는 반드시 참가해야 함**

* 첨부: 1. 당뇨병학회 연구비 지급규정 1부 2. 연구비 신청양식 1부. 끝.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김

철

이사장

김

성



별첨1)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 지급 규정

1차 개정 2002년 11월 9일
2차 개정 2006년 2월 21일
3차 개정 2007년 2월 13일
4차 개정 2008년 2월 19일
5차 개정 2009년 11월 19일
6차 개정 2012년 2월 20일
7차 개정 2014년 2월 25일
8차 개정 2015년 3월 03일
9차 개정 2018년 2월 20일
10차 개정 2019년 3월 13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라 한다.

제 3 조 (받는 사람 또는 과제)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해마다 각 상당 1건씩으로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연구자로 조교수급 이상 (전임강사 및 임상 조교수 포함) 부교수급 이하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한 연구자가 한 해에 한 상의 수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지급후보자의 추천)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자는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로 구성된 연구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연구위원회 이사를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 7 조 (추천 구비서류)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2) 추천서 1통
- (3) 이력서 1통 (사진 첨부)
- (4)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RB)를 거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 (5)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최근 3년간의 논문목록을 SCI 등재 외국학술지 게재 논문과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은 pdf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
- (6) 연구 책임자 서약서(소정양식)

제 8 조 (연구과제심사)

운영위원장은 15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을 정해진 세칙에 의거하여 계수화한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 평가 점수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수혜자를 결정한다. 당뇨교육 활동상은 당뇨병 교육의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회원 또는 기관에 수혜하며 교육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점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

제 9 조 (연구비 과제결정)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연구비지급)

연구비는 대한당뇨병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석상에서 지급하며 연구비 지급 시기와 연구비 액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1 조(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당뇨병 교육연구비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수혜자는

- ① 연구비 수혜 후 2년 내에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하여야 하며,
- ② 연구비 수혜 후 4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대표 학술지 또는 SCI(E) 잡지에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고 논문은 PDF 파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연구비 수혜 후 4년 내에 SCI 논문에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을 3회 이상 인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당뇨병 교육연구비의 수혜자는 연구비 수혜 후 2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또는 유관학회 (간호사회/영양사회 등)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게재된 초록 PDF파일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은 2002년 11월 9일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 (3) 국가기관 및 타 학회로부터 연구비 수혜 받고 있는 동일한 과제로 연구비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하며, 적발 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다.
- (4) 연구비 수혜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하지 못한 자는 소정 양식의 보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제재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는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며, 각각의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성실 실패:

- 논문은 출간하였으나, 연구비 의무사항 중 Journal의 SCI(E) 및 사사(acknowledgement) 표기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구책임자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연구노트 등 연구 자료들과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사유가 소명될 경우

② 불성실 실패:

- 연구책임자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논문투고 이력, 투고 시 작성한 논문 원본, 연구노트, 연구결과물 규정 미 준수 사유서 등의 자료들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연구계획서와 다른 연구로 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
- ‘불성실 실패’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향후 당뇨병 학회 연구비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연구계획 평가 세칙

1. 본 연구비의 수혜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은 계수화된 연구계획의 평가로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 참고 사항으로 삼는다.
2. 심사위원회에게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계획서 사본을 우편 발송하고 연구계획을 다음의 항목에 의거해 평가한 평가서를 회신 받는다. 심사위원 중 각 연구 계획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

를 준 1인과 가장 낮은 점수를 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정확한 연구 목표 설정	10	8	6	4	2
연구 목적의 중요성	10	8	6	4	2
연구 내용의 창의성	10	8	6	4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5	4	3	2	1
기간 내 수행 가능성	5	4	3	2	1
진료지침에 대한 기여 가능성(임상연구)	5	4	3	2	1
			총점	/ 45	